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 4. 17

시민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4. 1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 4. 10.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4.1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등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
    - (2)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 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 및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을 보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및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음.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하였음.

-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2002.1.26법률제6627호)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 개편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 감시활동으로 인한 두 단체간의 의견 대립은 없는가 ?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시에는 확대실시를 하므로 대립은 없으며 감시활동이 점차 일원화가 될것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등의 제공으로 단속될 시 업주에 대한 처벌만 있음.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불이익은 없는가 ?
- 답변요지(조성대 생활복지국장) : 미성년자이므로 현재로는 처벌이 어려움.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2. 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4)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등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
- (2)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원, 청소년단체·시민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 6조)

### 3. 근거법령

- (1) 청소년기본법(2002. 1.26 법률 제6627호) 제8조 및 제13조 등
- (2) 청소년보호법(2001. 5.24 법률 제6479호) 제2조 및 제5조 등

4. 조례(안) : 불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2.3.15~4.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2. 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
6.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및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  
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구청장  
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 2명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u></p>
<p><b>제2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u></li> <li>2. <u>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u></li> <li>3. <u>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u></li> <li>4. <u>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u></li> <li>5. <u>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u></li> </ol>	<p><b>제2조(기능)</b>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u></li> <li>2.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u></li> <li>3.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u></li> <li>4. <u>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u></li> <li>5.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u></li> <li>6.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li> </ol> <p>② 위원회는 <u>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u></p>	<p><b>제2조(기능)</b>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u></li> <li>2.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u></li> <li>3.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u></li> <li>4. <u>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u></li> <li>5.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u></li> <li>6.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li> </ol> <p>② 위원회는 <u>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u></p>	<p><b>제2조(기능)</b>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u></li> <li>2.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u></li> <li>3.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u></li> <li>4. <u>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u></li> <li>5.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u></li> <li>6.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li> </ol> <p>② 위원회는 <u>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u></p>	<p><b>제2조(기능)</b>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u></li> <li>2.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u></li> <li>3.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u></li> <li>4. <u>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u></li> <li>5.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u></li> <li>6. <u>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li> </ol> <p>② 위원회는 <u>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u></p>
<p><b>제3조(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3조(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3조(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3조(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3조(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의회 의원</li> <li>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및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li> <li>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b>제4조(위원의 임기)</b>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②관계행정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b>제4조(위원의 임기)</b>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b>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b>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2명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b>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p> <p><u>②</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u>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u>②</u>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③</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